

학술정보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개정 2019.04.17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술정보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사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학술정보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② 학술정보원 자료구입 및 선정방침, 결정에 관한 사항
- ③ 대학도서관진흥법 제 9조의 대학학술정보원 발전계획
- ④ 도서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- ⑤ 학술정보원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- ⑥ 그 밖에 학술정보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학술정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 (임기)

- 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

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.

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학술정보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회의록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경비 등 지원)

-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 (지침)

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이 시행되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은 폐기한다.